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. 11. 27 선고 2018가단1932 판결 [토지인도 및 가건물철거]

전 문

원고판부농업협동조합

피고금토판매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18. 11. 13.

판결 선고2018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흙벽돌조 스텔지붕 단층 창고 27.8㎡ 및 단층 화장실 2.8㎡를 철거하고,
나.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토지 60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장두영

별지